

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04월 19일

홍천읍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 조치 사항 직권 조치 일자
이 *철	이 *철 1983-10-01	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로16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4-19